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대만 냉전시기의 법제 - 국가 백색 테리리즘의 역사적 교훈

이청답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대만 냉전시기의 법제 - 국가 백색 테러리즘의 역사적 교훈

이청담

본문적요

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냉전시기전의 법제(the Pre-Cold-War Period)

1. 파시즘과 법제(Fascism and Law)
2. 냉전시기전의 대만사회
 - (1) '2.28사건' 전후의 대만
 - (2) 국민당의 '당에 의한 국가(黨國)' 이식과 대만사회에의 침투
3. 냉전 '내부억압(Coercion)'의 형성
 - (1) 중국 정치형세는 세계 냉전 구조의 부분이다.
 - (2) 군관계엄체제 전통의 연장
 - (3) 법률은 통치구도의 실익을 가진다.

제 3 절 냉전시기중의 법제(Law in the Cold-War-Period)

1. 대만 냉전체제로 진입하다.
 - (1) 행정체계(군권을 포함)를 사법권보다 우위에 두다.
 - (2) 행정체계(군.경.비밀요원을 포함)가 사법권을 침탈하다.
 - (3) 고립정치세력을 차별대우하다(Discrimiantion Treatment).
 - (4) 계엄해제의 기만전략 - 국내냉전의 연장
2. 국가경제관리체제의 무한확대: 총동원법제
 - (1) 시간상으로 군사교전상태의 무한연장
 - (2) 공간상으로 국가지배권력의 무한확장
3. 국가억압체제의 무한팽창: 법제평정

제 4 절 국가 '합법성' 유지 모호

1. 헌법수정을 통해 '합법성'의 자기만족체계를 만들어냈다: '반란평정시기의 임시조항 동원'과 수정
2. 정부를 변환시켜 '합법성'의 자기증명체계를 만들어낸다: '상호엄호와 비제약'의 권력분산
3. '합법성'의 자기만족체계와 자기증명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다.

제 5 절 맷음말

- 참고표
1. 민국 초창기 '군벌시기'(1912-27)의 주요 공법의 도표
 2. 국민당 '당국(黨國)'체제. 대륙시기(1928-49)의 특별형법도표
 3. 국민당 '반공법제'의 주요 명세표
 4. 냉전시기 대만의 '비법률근거'의 계엄명령도표
 5. 국민당은 헌법수정을 통해 '합법성'의 자기만족체계를 만들어냈다.
 6. 국민당은 정부를 변환시켜 '합법성'의 자기증명체계를 만들어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밥을 갈아서 양식을 구하니, 제왕의 힘이 나에게 무슨 필요 있는가?'

- 격양가, '고시원전주', '고일' 편 제 1 수

'정부는 군대의 주요 임무는 외적을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진실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임무는 자기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 톨스토이(1828-1910), '그대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천국'(1893) 제 7 장

제 1 절 머리 말

본문의 요지는 냉전시기 국가의 백색테러의 통치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법제는 여전히 '一管二煎, 三亂四賤, 五橫騙'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했다.

1. '국가중심'이 '사회본위'를 대신하는 도착현상
2. '자본확장'이 '노동우선'을 억압하는 역류현상
3. '정치우선'이 '공간발전'을 왜곡하는 악질현상
4. '독선'이 '민주적 의견'을 짓밟는 관료의 분위기
5. '형식적 논리'가 '실질적인 이성'을 왜곡하는 맹점

역사변천상, 이러한 특징과 냉전시기 대만의 법제체제는 불가분의 애매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초에서 보면 냉전은 확실히 대만의 '내부법률 발전'의 관건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냉전은 대만의 '외부법률 발전'의 관건을 형성하였다. 역사를 돌아보면 1895년 4월 17일, 청왕조는 대사 이홍장과 일본 전권대표 이등박문은 '講和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만 할양을 위한 시초는 '馬關조약'. 1945년 세계대전 종결후 대만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났다.

이전에 중.미.영이 체결한 '카이로선언'(1943.12.1)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삼국의 종지(주지)는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후 태평양에서 빼앗거나 점령한 모든 섬과 일본에 의해 중국에서 훔쳐간 영토,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팽호열도 등은 중화민국에 돌려 주어야 한다.'

이후 중.미.영.소가 체결한 '포츠담선언'(1945.7.26) 제8장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일본이 동맹국에 투항하는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이에 미.중.영 삼국 정부의 수상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발표하고, 그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 가입하여 공고열거한 조항을 정수한다.'

이어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은 다시 중국의 주권 아래로 돌아왔고, 이는 국제간 '법률상'의 관계의 실현이다. 그러나 왜 대만과 대륙 양자간의 '사실상'의 관계는 오히려 급격히 악화되고, 4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는 서로 다른 발전을 해갔는가? 가장 커다란 내적 원인은 '국공내전'이며, 가장 커다란 외적 원인은 '동서냉전'이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문은 즉,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망명한 후 '냉전시기'의 대만법제를 논술의 주제로 삼아 국가와 법률제도, 사회 본질과 그 역사 기초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문은 국민당의 '당국체제'의 형성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백색테러법제의 기원을 검토하겠다. 그후, 냉전시기의 대만의 사회관계 진행에 대해서 분석하고, 당시의 법률배력의 위치를 완성하겠다.

제 2 절 냉전시기의 법제

근대의 대만은 법률에 대해 '통치의 도구, 계급압박의 무기'로 여기는 역사기초에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반해서 발전한 배경을 형상화하였다; 1895년부터 대만은 일본의 50년간의 통치를 통해 일본이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법제를 채택실행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일본 패전후, 대만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국민당이 집정하는 중화민국정부가 접수하여 대만을 '국민당 중국'을 채택실행하며, 근대 자유주의 법제라 자칭하였고 계속 발전하여 52년 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동서양 양대진영의 '냉전시기'였고, 그 법제의 역할과 성질은 당시의 모든 세계형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역사의 계승에서 볼 때 '계엄군관'은 국민당 '당국'이 북양군벌의 옛 전통에서 계승한 것이다. 일찍이 1912-27년까지는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혁명변동 과정에 처해있었다(참고표 1 참조). 1927년 국민당이 '북벌'을 성공하고, '당국'의 훈정을 건립한 후 자유주의법제로서 파시즘과 법제의 기초를 만들고, 이를 엄폐하였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후 국민당 통치구조 내부의 주요한 모순들 중 하나이다.

1. 파시즘과 법제

항전 승리후 자산계급에 의해 주도된 국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유주의 입헌국가를 향해나갔다. 그러나 '동원?란' 입법은 오히려 '헌정실시'보다 먼저 나타났으며, 집권자들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것을 은폐하려 하였다. 당시 주로 종사한 정치과정은 모두가 제헌작업에 속해 있었다. 1947년 12월 25일부터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형식상 훈정시기를 종결하면서 헌정시기로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대륙은 일찍이 '내전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시국은 '법의 명분을 따르려 하나 법의 실시를 따르지 않는' 곤경스런 국면으로 변했다. 같은 해 여름 7월 4일 국민당은 또 국민정부 '공비반란토벌을 위한 전국 총동원령 단행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7월 19일 또한 '동원?란, 헌정실시완성 강요'를 통과시켰다. 생각해보라. '동원'과 '?란'은 어울린다 할지라도 어찌 '헌법'과 '?란'이 같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러한 보통헌법외에 공화초창기에 '당국'체제하에서 여전히 일련의 극형에 처하게 하는 '특별형법'이 있었다. 형식상의 헌법의 행사는 4개월 반이라는 단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국민정부는 1948년 5월 10일 공포하였으며, 효력된 헌법을 정지시키고, 총통의 권한을 대폭확대한 '동원?란 시기의 임시조항'과 같았다. '대외정치'의 국회(임법원)를 보면, 헌법의 행사후 곧 지위가 떨어지게 되고, 5월 18일 정식 개회하였으며, '동원?란 시기 임시조항'의 공포와 겨우 1주일의 간격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진보적이나 대내적으로 전제적인' 것이 '당국'체제의 본질이다. 1947년 12월 25일 헌법 실행 후의 법제로 인해서 '동원?란 시기의 임시조항' 공포로 말미암아 시국불안 하에서의 군사체제를 공고히하고, 국가와 법률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고, 동원된 군사 권위에 '당국'의 파시즘법제를 덧붙였다.

중국국민당의 '일당독재'로 말미암아 중화민국의 '당국'법제가 만들어지고, 일련의 가혹한 형벌의 수단으로서 무수한 사형을 언도하며 공산당을 억압하고, 적화예방을 위한 '반공법제'를 반포하였지만, 아편전쟁 전후의 민생폐弛는 신해혁명에 이른 이후에도 사회모순과 계급압박의 누적이 계속되고, 마침내 공산당은 광대한 인민의 지지에 힘입어 무력항쟁의 수단으로 국민당의 국민정부를 타도하였다. 1949년 4월 22일에 이르러 국민정부는 남경에서 광주로 피난가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10월 12일 국민정부는 다시 광주에서 중경으로, 11월 29일에는 다시 성도로, 12월 7일 마침내 대만으로 망명한다. 마침 공교롭게도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후,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에서 이른바 '協防'을 진행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철저한 소멸은 면하게 된다.

2. 냉전시기의 대만사회

2차 대전이 종결된 1945년 대만도 일본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였으며,

대만은 더 자유로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만의 실제상황은 이와 멀었다.

(1) '2.28사건' 전후의 대만

먼저 정치상으로 전제형태로 진입하였다. 진의가 제출한 '대만성 행정장관 관공서'가 실행한 것은 일종의 '전성의 행정, 사법, 입법, 군사 대권을 한 몸에 가지는 독재전제통치였다. 받아들여지면서 '여지로 빼앗아 챙기는 것'으로 변형되었고, 이는 사회불안 요소를 물어두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상으로는 혼란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노동자의 실업, 도시주민의 과산, 대량밀수, 미곡의 유출, 양식공황, 물가상승, 빈곤선상에서 민중의 발버둥은 바로 당시 대만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제멋대로인 경제통치정책은 상공업자에게 발전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독직사건은 끊이지 않고 정치부패는 나날이 증가하였으며, 어떠한 개선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경제 모순은 마침내 1947년 2월 27일 대만성 전매국 밀수 감시원과 경찰이 담배 판매상과 민중을 때려 부상을 입힘으로서 폭발하였다. 2월 28일 더많은 군중이 전매국을 둘러쌓다. 이후 진의는 계엄실행을 선포하고, 군경이 시내를 순찰하며 적지않은 군중을 때려죽였다. 이때 이미 대만 전체는 제어할 수 없었고, 타이뻬이 시민의 파업, 철시, 수업거부, 전 섬의 각 현과 시도에서는 정부에 대한 저항과 외지인 배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후 사회의 자치능력은 군.경.비밀요원에 의해 강제진압되었고 '2.28사건'은 인민민주자치운동이었고, 그 주요한 요구는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전제와 독직부패현상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당 당국은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정부전복, 정권탈취, 국가배반의 기도'라는 반란죄명을 첨가해서 잔혹한 진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진압후, '백색테러'가 나타나게되고, '대만은 일단의 기나긴 정치적 겨울에 들어가게 된다.' 대만 인민과 국민당 당국 간의 상호배척뿐만 아니라, 토박이와 외지인간에는 더 커다란 모순과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이른바 '2.28사건'은 당대 대만 정치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놓았다.

(2) 국민당 '당국' 이식과 대만사회에의 침투

2.28사건은 1947년 전후의 대만인민이 국민당통치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국민당은 대만과 대만인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하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실패한 국민당 고위층은 여러번의 권력장악을 통해서 대만으로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국민당군정의 수장은 또한 1949년 5월 20일 계엄령을 발포하고 전 성을 봉쇄하여 (1)대만장악, 사회침투의 통치 (2)장기간에 걸친 협약 양안의 단절 (3)“봉기”에 대한 그 길의 모순을 혼선한다.

(3)내부압박의 당,정,군 집권 등의 모습을 형성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국'체제 대륙시기(1928-49)는 기존의 '선당후국(당우선주의)', '당에 의한 군의 영도' 등의 권력운용이 대만에서 더욱 철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 2월 23일 '국민당 중앙상임위원회' 장개석의 총통직 복귀를 결정하고, 그후에 위헌인 입법원이 '국민대회를 대체하는' 조작을 하였다. 또 같은 해 7월 22일 '중국 국민당 개조방안'을 통과하여 일련의 이색 분자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만 시기의 '당국체제'를 철저히 세웠다. 냉전 전후시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개조사업은 당정의 원로, 군대의 장성, 계파의 영수, 심지어 숙청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백색테러의 위험을 심화하였다.

알 수 있듯이 국민당의 ‘당국 백색테러리즘’은 성적(출신자)의 구분이 없었다. 역사상으로 설명하자면 국민당 개조는 국민당 역사상에 드물게 보이는 정풍운동이었으며, 장씨부자를 영수로 하는 국민당 ‘당국’은 대만통치의 기초를 든든히 하였다.

3. 내부억압의 형성

냉전시기 최소한 세계 항목의 이유가 대만 내부의 억압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 정치형세는 세계 냉전구조의 부분이다.

'냉전'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 소련의 대치에 의해서 당시의 반공책략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각지 권력층을 재편성하고, 각 지역의 반동정권 또한 미국 주도의 '반공협약'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보호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1949년 'NATO', 1950년 '한미공동방어협정', 1951년 '美紐澳太平安全條約', '미일안전보장조약', 1954년 '중미협력방어조약', '동남아시아협의조직', 그리고 1955년 '바그다드협의조직' 등이 그 예이다. 1950년대를 통틀어 대다수 개발도상국가의 관료, 지주, 자본가 그리고 군대가 결합한 정권은 계속해서 '미국 지지를 통치의 후원자로 삼았으며', 인민을 압박하는 베색 테러를 실시하였다. 대만으로 망명한 국민당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냉전하에서 민족해방과 민주개혁을 쟁취하는 것은, 특히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삼는 개인이나 조직은 모두가 전세계 백색테러의 숙청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국민당은 내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색분자, 반대분자, 위험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대량으로 체포, 살해하였다. 대만 섬 내에서 일어났던 내전반대, 국공회담주장, 평화통일국가, 민주개선, 민생안정은 모두가 공산당의 특수 임무로 간주되어 숙청당하거나 해를 입었다. 대만 내부의 억압정치는 또한 미국의 대 대만정책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백색테러 속에서 전체섬은 군법통치와 비밀재판의 고조기로 진입하였다.

(2) 군. 관계업체제 전통의 연장

역사적 전통에서 ‘군·관제엄’은 국민당의 ‘당국’이 북양군벌의 옛전통에서 계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엄군관제의 비상, 긴급법제는 자연히 북양군벌 아래의 각종 군사정권이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전쟁 혹은 비상사변을 빌어 인민주권을 탈취하게 하였다. 첫 번째, 국민당의 이른바 ‘군관법령, 준비하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민국 73년(1984)의 예를 들어보면 이 해의 台非字91호로 판결, 台非字64호로 판결, 台非字199호로 판결, 台非字11호로 판결, 모두가 증명하는 바이다. 둘째로 법제상으로 ‘제엄포고’의 문서를 통해서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임의로 인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탈취, 제한하였다. 기자 출신의 조모승은 백색테러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총살자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노동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특히 어민이 많다. 그들의 죄명은 ‘공비지역에 잠입하여 연해 어업실시. 공비와 내통한 혐의가 있음’으로 거의가 일치한다.’

장기간의 이와 같은 군사계엄은 이미 법치의 변형을 가져와서 이른바 공화독재의 법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3) 법률도 통치도구의 실익을 가진다

냉전의 점차적인 진전에 따라 법제는 각개 대 치진영 내부의 억압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일항전 때의 '국가총동원'과 공산당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반란평정'이 되었고, 법제의 의미와 내포의미에는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치적, 군사적, 혹은 당의 집권 이익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생사존망, 기세제압에 관계가 있으므로 총동원이 될 수도 있고, 반란평정이 될 수도 있었다. 한쪽에선 조개를 씻고 다른 쪽에선 바지를 빨고 있으니 어찌 한꺼번에 두 곳을 물 수 있겠는가?

역사는 이와 같이 황당무계하게 변해갔다. 대일항쟁을 위한 '국가총동원법'(1942년 3월 29일 공포, 5월 5일 실행)과 '국가총동원방해 징벌 임의시행 조례'(1942년 6월 29일 공포, 8월 1일 실행)는 전후 항전 목적은 이미 완성됨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공무력항쟁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여전히 국가총동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여기고,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공산당의 반란을 평정한다하여, 억지로 '대일항전의 총동원'에 '공산당 반란평정에 대처'를 덧붙여 '동원하여 반란을 평정한다'는 일거양득을 이루었다.

정부가 대만으로 망명한 후, 대만해협의 전면적인 격리로 말미암아 국풍 쌈밥은 여전히 군사대치

상황에 있었으나, 1950년 미국 합대가 '협방' 격리하에서 '외부모순'은 이미 상호대결의 군사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망명한 참담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대만에 도착했을 때는 주객관적 상황에서 이미 참담한 패배의 형상이었고, '내부모순'을 억압하기 위해서 첫 단계인 '제엄법제' 외에 제2단계인 '총동원법제', 제3단계인 '반란평정법제', 혹은 양자를 합해서 '총동원반란평정법제' 등을 만들어 다각적인 비상법제를 협성화으로써 작은 대안을 바람 한점 통하지 않는 백색테러공간으로 만들었다.

제 3 절 냉전시기의 법제

냉전 하에서의 군관은 비정식적이며 비상사태에 속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만은 냉전체제에 진입하여 정식적인 법률체계를 통한 것도 아니며, 또한 계엄의 정도 역시 교전상태 속의 군사권력운용에 치해있었다.

1. 대량 냉전체제로 진입하다

국민정부의 계엄법은 1934년 공포시행한 후 내전과 대일항전을 거치면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1948년 12월 10일 장개석은 '동원반란평정시기의 임시조항'에 의거하여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그후 1949년 1월 24일 이종인이 행정원에 전국계엄령 철회를 명령나, 대만, 신강, 티벳은 제외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19일 대만성 경비 총사령부는 총통도 아니고(장개석은 이직하였음), 부총통도 아니면서(이종인은 직무대행) 대만계엄령을 선포하고(제1조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다), 다음 날을 기해 전성계엄령을 포고하였다. 같은 해 11월 2일 행정원 정무회의는 대만, 해남도 등 접전지구를 포함한 전국에 선포함을 통과시켰고 1950년 3월 14일 입법원의 추인을 거쳤다. 계엄의 절차는 없어도 계엄의 사실은 있었고, 체제가 완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서술한 계엄의 절차는 '계엄법' 제1조의 계엄선포절차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1) 행정체계(군권을 포함)를 사법권보다 우위에 두다

(1) 행정체계(군단을 포함)를 가급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이다.
비록 냉전시기의 법제중 대부분이 '제엄시기' 법률의 모습을 하고있지는 않지만, 대만성 총경비사령부, 대만성 보안사령부, 국방부는 오히려 '제엄령' 제11조에 의거한 권한부여로 계속해서 일련의 인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빼앗거나 제한하기에 충분한 행정명령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법률 기초가 없는 '제엄명령'에 의거하여 대만에서 장기간에 걸친 제엄법제를 시행하였다(참고표4 참조). 이러한 제엄명령은 모두가 1987년 7월 15일 0시까지 시행되었고, 새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동원반란평정시기 국가안전법)은 폐기를 고하게 되었다.

(2) 해결체계(군·경·비밀요원을 포함)가 사법권을 침탈하다

(2) 행정제재(군, 경, 마을교민을 포함)가 부합하는 경우다.
계엄법제중 현법이 보장하는 인신의 자유가 행정기관이 반포한 하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체포, 구금, 처벌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1955년 10월 24일 행정원이 공포시행한 '대만성 계엄시기 범죄자 처벌방법'이다. 첫 번째로 1961년까지 시행하였으며, 감찰원은 이 행정명령의 위헌과 위법에 대해 행정원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두 번째로 24년간 연장되었으며 1985년 7월 19일 입법원의 입법을 통하여 '동원반란 평정시기 범죄자 검사숙청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는 1987년 7월 15일 0시를 기해 '국안법'이 계엄의 속임수를 대체하였으나 실상도 다를 바가 없다. 세 번째로 '동원반란평정'을 끝낸 후에 1992년 7월 29일 '동원반란평정시기'의 범률을 폐지하여 '범죄자 검사숙청 조례'를 공포하여 공공연하게 1995년 6월까지 계속 시행하였으며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384호 해석'을 만들고 이 조항의 제5조 5항 규정의 위헌을 인정하였으나 위헌상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네 번째로 장기간에 걸쳐 '입법태만'의 책망을 받은 입법원은 1996년 12월 30일 무시무시한 '공창시기'를 만들어내어 교도소 속의 범죄자를 '불법감금'하고 마침내 고효율적으로 행정부문에 대해 급속히 양보하여 '범죄자에 대한 검사숙청 조례 수정안' 제 3편을 완성하여 '동원반란평정' 위헌체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1996년 2백명의 '치평특별안건'을 돌이켜보면 하나도 '범죄자 검사숙청 조례'에 의거한 것이 없는데 이

러한 조례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상대편을 위협해야 하는가? 정녕 완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고령정치세력을 차별대우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유주의헌법으로서 파시즘주의와 법제의 기초를 삼다’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당 통치구조가 지닌 주요 모순중의 하나이다. 차별대우의 실제 정치운용은 ‘법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명분 아래 가리워져 있었고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정치활동세력과 일반백성은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

정치활동세력은 차별대우하는 위치에 두어 관련 안건은 모두 '특별안건' 방식으로 처리하여 일반 국민과 다르게 한다. 대만 계엄법제하에서의 사법은 '계엄법' 제7조 규정의 영향(사법사무는 그곳 최고 사령관의 관장하에 둔다)을 받지 않으며, 민·형사소송 안건은 여전히 보통법원과 검찰기관으로 나누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심리한다. 통치계층은 '타격면을 축소'하는데 숙지하는 것이 이의를 가진 정치세력을 고립시키는데 필수수단인 것이다.

② 사법은 오랜 기간 권위통치의 행정체제를 형성하였다.

권력구조상 법원조직은 오히려 군벌시기와 '당국' 훈정시기의 법제를 답습하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모두가 '행정권' 아래, 또는 행정원 아래의 사법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며 사법원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위헌적 사법체계는 국민당 스스로가 인정한 '자유주의헌법'의 실증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0년이 지난후 '타이뻬이-워싱턴' 단교로 인해 대만 내부의 개혁의 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현법 해석기관의 위헌해석이 실천적인 지지를 얻어 1980년 7월 1일 '예속의 분리에 대한 심리 검토'를 실시하여 고등이하 각급 법원이 사법원의 예속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행정원에 속해있던 '사법행정부'는 법무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는 이미 자유주의헌정의 이름을 빌어 다스린지 33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러나 개편후 법무부의 사법권력분배는 여전히 중간단계와 입법위원 등의 외부 '조사국/부본부', '조사국/검찰관' 권력중 속의 질의를 가지고 있다.

③ 특별형법과 특별법정이 존재하면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차별대우를 만든 원인은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압밥법률기구를 폐지하지 않으며 또한 앞에서 서술한 특별형법과 특별법정이다. 이와 같은 체제는 '자유주의의 명분을 가지고 과시증을 실행하는 본질'은 냉전시기 백색테러의 범제기초이다. 형식상 '헌법' 제9조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을 제외한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계엄법제하에서 특히 '계엄법' 제8조의 규정으로 인해 일반백성의 상당수가 군사재판을 받았으며, 특히 '반란판단처벌조례'에 저촉된 정치 범죄는 모든 것이 군사법정에서 비밀리에 심리판결한다. 예를 들어 이오 1991년 출판한 심의결정한 '국가안전국' 기밀문서, '역대 공비사건 처리 총집'(1959년) 제 1집과 제2집, 그중 모두 162건은 시간적으로 1949년에서 1958년까지 10년간이다. 이오는 광방자료를 근거로 하여 얻어냈다.

'사실상 '입법원공보' 제78권 제49기 위원회 기록중, 법무부대표 전수황 검찰관의 토로에 의하면 '비현역 군인의 형사사건은 통계에 의하면 계엄 38년간 모두 29407여건이 있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공비사건 처리 총집'중 겨우 162건의 사안은 나머지에도 끼지 못한다.'

(4) 계업해제의 기한 - 내부냉전의 역할

대만의 1987년 계엄해제는 원래 냉전이 종결해가는 세계추세에 응한 것이었지만, 세계추세는 국
내당의 쇄국적인 '당국' 통치문화하에서 민주자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었다. 사실이 증명하
듯이 '계엄해제반대'의 포석은 앞에서 말한 '형식적 계엄해제, 실질적인 경엄지속'과 '형식적인 민주,
실질적인 권위'라는 기반적인 계엄해제를 만들었다.

대만은 38년간의 계엄을 정부당국의 군사심리재판의 군벌전통에 대한 의존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랜 세월 속에서 군사법원을 통해 심리판결한 안건은 거의 30,000건에 달하며, 일단 계

음을 해제하고 국민에게 상소를 허가할 경우 통치의 합법성은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체면은 어디에 있는가? 보통법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중국 국민당이 장악한 정부는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히 인민의 이익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혹은 헌법상으로 부여된 권력을 통해 '고소무하'를 명시한 소송권(헌법 제16조)도 여전히 타락한 입법원의 '국안법' 제9조 규정을 통해 '고소무하'로 치환되는 위험성이 있다. 계엄시기 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심리기관의 심리를 거친 비현역군인의 형사문'의 철문에 설치되었다. 계엄시기 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심리기관의 심리를 거친 비현역군인의 형사문'의 철문에 설치되었다. 계엄시기 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심리기관의 심리를 거친 비현역군인의 형사문'의 철문에 설치되었다.

2 국가경제관리체제의 무한확대: 총동원법제

1942년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은 전시경제 통제법에 속하는 것 외에 전시 매체, 언론, 통신, 집회, 결사의 통제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발포한 각종 행정명령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민의 기본적인 자유,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고 제한하며, 정부가 발포한 동원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1942년) '국가총동원방해 징벌 임시시행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의 형벌을 언도할 수 있고, 가장 중죄인은 사형에 처리고 행정권이 주재, 반포하는 동원 법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률단계성의 원칙, 그리고 민주헌정의 법제원리에서 말하자면 모두가 위언법제나 고 하는 이유가 아래와 같다.

(1) 시간상으로 군사교전상태가 무한히 연장되었다

(1) 시간적으로 순서교란 등이나, ..., 대
2차 세계대전 종결후 '국가총동원법의 입법목적도 이미 달성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시기법'에 대
해서 국민정부는 당연히 이 법의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법 실행의 정지를 선포하여야 한다. 설령
통치계급이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법률로 바꾸어야 하고 때와 정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1942년 3월 29일에 공포하여 지금까지 계엄해제와 동원반란평정의
종결을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처음과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법률시행이 유효하니 인류문명 법재사상
기적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상으로 국가권력이 무한히 확장되었다

(2) 경선 강으로 국가원수를產生하는 행정명령은 1947년 7월 19일 법의 본원에 있어서 헌법 수행전의 국민정부가 가진 한 장의 행정명령이 바로 1947년 7월 19일 공포한 '동원반란평정 완성을 위한 헌정실시요강'이며, 여전히 모든 총동원법제를 구성하는 관건이다. 이 요강의 제17조에 명시한 반란평정달성의 목적에 의하면 행정원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수시로 필요한 명령을 발포할 수 있다. 헌법 수행후 대안으로 망명한 행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1951년 12월 7일 '반란평정시기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법규명령 선포방법'을 공포하고 여기에서 위 현의 방법을 명시하였다.

‘지금은 반란을 평정하고 동원할 만한 시기이며, 국가총동원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필요할 때 국가총동원법 반포 명령에 의해서 법규를 제정하고, 인력·물자를 집중시켜 인민의 부분적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규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1947년 헌법수행후의 행정원은 이론상으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국가기관이므로 당연히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헌법수행전’의 행정명령에 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 물자’를 집중시킴으로서 인민의 부분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위헌적인 방법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이중모순

을 검증하고 정부가 여전히 폐지해야만 할 법률에 의거하여 헌법의 제약을 받지 dsg는 명령을 반포하거나 혹은 헌법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공공연히 위헌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2차 세계대전후에 대만 법제체제 순환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3. 국가억압체제의 무한팽창: 반란평정법제

2차 세계대전후의 대만법제는 앞에서 서술한 백색테러를 지지하는 계엄법제와 총동원법제를 제회하고 '반란평정법제'나 '총동원법제와 서로 섞여서 분명치않은 '동원반란평정법제'가 여전히 있었다. 사실상 법률규정 내용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반란평정시기'의 법률은 '반란평정시기 공비 간첩 검사 숙청 조례'와 '반란평정시기 군인 혼인 조례'는 반란평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반란평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

풍자적으로 모든 '반란평정법제' 중 백색테러를 일으킨 중심도구 또는 '반란징벌조례'는 오히려 '반란평정시기'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전문적으로 공산당의 정치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으로 선포되었고, 그것과 국민당 정권의 궐기의 오랜 근원이 있으며(참고표3 참조) 그 전신은 '반란평정시기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는 긴급범죄 처벌 조례'(1946)이다. 이러한 항목의 조례는 모든 법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란평정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1947년 12월 25일 (이른바 국민당이 스스로 '현법수행 기념일'이라고 하는) 시행한 입법을 공포하였다. 오로지 뒷날의 '국공회담'의 필요로 인해서, 1949년 3월 20일 국민정부는 '국공회담' 파열로 인해서 정세가 급변하여 비록 만3개월동안 폐지되었지만 같은 해 6월 21일 '반란처벌조례'를 공포, 시행하였다. 이러한 백색테러의 핵심무기는 제1조 규정이외에 제2조 1항은 '사형'이라는 진혹한 본질을 드러내었고(2조 1이라고 이름붙여짐), 감성적 정치수단의 특수임무와 배합되고, 군사법기관의 '비밀재판'이 더해지면서 무수히 총살된 우너한들이 생겨났고, 미국의 보호 아래서 국민당 독재통치의 공고화를 강화해나갔다.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혈흔이 낭자한 정치형법은 대륙시기 전문적으로 공산당에 대처하기 위한 타격수단에서 '한자도 변하지 않은 채' 전문적으로 대만 내부의 이색 정치인들을 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비록 계엄해제라고는 하나 국민당은 여전히 특별형법의 통치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5월의 ‘獨台會案’은 백색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학생운동을 촉발하였고 비로소 같은 해 5월 17일 ‘반반처벌조례’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백색테러의 그림자는 형법에 드리워져있고, 제100조의 불명확한 규정은 형사사법기관이 이 조항을 남용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언론내란죄 혹은 평화내란죄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치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민주운동과 사회 이견을 억누르고 있다. 형법의 숨겨진 테러체제는 사회운동계의 항쟁을 통해 입법원이 마침내 1992년 형법 제100조를 수정하고, 언론내란죄, 평화내란죄를 폐지하고 형식상으로는 통치자가 형법을 남용하여 특정정치언론을 억압하는 가능성을 줄였다.

비정상적인 전시의 법률체제가 한편으로는 국민당의 백색테러를 강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민주자유를 탄압하는 모순을 심화시켰다. 법률이 통치자의 도구가 됨에 따라 본래의 정당성은 점차로 공허한 ‘반란평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흘러들어갔다. 시간상으로 ‘동원반란평정시기’ 임시조례(1948년 5월 10일) 공포후, 법제에 있어서도 ‘동원반란평정시기’라 불리게 되었으며, 그후 입법원이 제정한 반란평정법률은 모두가 ‘동원반란평정시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입법상으로는 ‘반란평정시기’라는 글자만 있었다. 30여년이 지난 후 1980년 5월 14일 공포시행된 ‘동원반란평정시기 공무원 선거파면법’에 처음으로 ‘동원반란평정시기’라고 써여있었다. 이때부터 ‘동원반란평정시기’라는 글자는 국민당의 입법에서 ‘정상적인 인권보장으로 돌아가는 법률체제를 거부한다’는 말로 돌려서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1980년대 검사보급된 ‘인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는다’는 입법은 모든 것이 ‘동원반란평정시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동원반란평정’의 냉전 중에서의 의미를 들이켜보면 대만통치의 계으름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며, 입법초안은 계속해서 ‘동원반란평정시기’라는 구실을 빌어 본래의 위헌적인 입법을 합리화하고 기만하였다. 교묘하게도 ‘평시’는 ‘전시’로 변하고, ‘전시’는 ‘장기’로 변하고, ‘예외’는 ‘원칙’이 되었다.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내부모순은 냉전시기의 대만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파시스트 정권의 통치기초를 형성하였고, 2.28사건이래 현장, 시장의 민주선거 요구를 직면하였고, 다른 한편에서 '입법전통성의 위기'를 돌출시켰으니 바로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냉전시기 대만 법제의 문란은 물론 국민당의 '당국'체제가 중국대륙에서 중단되는 의해 와해되어 대안으로 망명하게 된 것과 관계있으며, 그 중에서 '당국'체제의 연속과 장개석을 통치핵심으로 하는 동원반란평정 임시헌정은 내부모순 법제의 근원을 짚어 숨기고 있다.

1. 헌법수정을 통해 '합법성'의 자기만족체계를 만들어냈다; '동원반란평정시기 임시조례' 및 그 수정

1949년 대만망명때부터 '당국'체제는 장계석이 중화민국의 총통은 아니었으나, 중국 국민당 총재의 신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통치의 합법성은 자아만족적인 체계 속에서 여러차례 이루어져야 했다. 국민당 당국의 이른바 '법적 정통성'은 주로 <중화민국헌법>과 <동원반란평정시기 임시조례>를 통치권력의 법률적인 근거로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빌어 장씨는 계속해서 총통의 지위를 얻었고, '변형된 종신제'를 통해서 제2대에서 제9대까지 총통을 연임하였다(참고 표5 참조).

- 갑. 입법원이 국민대회를 대신하여 총통이 '계속해서 직무할' 것을 견의한다.
- 을. 총통이 입법원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임기를 연장한다.
- 병. 사법원 대법관회의는 입법원과 감찰원의 '합법성'을 제공한다.
- 정. 입법원, 행정원, 그리고 총통은 국민대회의 '합법성'을 제공한다.
- 무. 국민대회는 다시 총통에게 되돌아감으로서 '합법성'의 체계가 순환하게 된다.
- 기. 국민대회는 첫 번째 '임시조항'을 수정하고 통치권을 확장한다.
- 경. 국민대회는 다시 '임시조항'을 수정하고, 동원반란평정체제를 팽창시킨다.

참조표5.

차례	주요관련	합법성의 자아만족	비판
갑	입법원이 국민대회를 대신하여 총통이 '계속해서 직무할' 것을 견의한다	첫째, 국민당정부를 따라 대만에 온 국민대표대회는 천명을 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전체국민대표대회의 반수에도 이르지 못한다.(제1차 대회는 총 3045명이며 2961명이 당선됐다) 둘째, 법제 곤란하에서 당시 강제로 끌어맞춘 반수로 개회할 수 있었던 입법원(제1차 입법위원회는 760명이며 380명이 과반수다)은 1950년 2월 24일, 380여명의 입법위원회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장씨 '복행시사안'요구를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3월 1일 장씨는 입법원 의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계속 직무하게 되고' '총통'에 오르게 된다.	참고표6 의 1부분
을	총통이 입법원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임기를 연장한다	첫째, 제1차 입법위원의 임기가 1951년 5월 7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총통'은 1950년 12월 27일 행정원의 '입법위원회의 직무수행 1년연장 요구결의'에 의거하여 입법원의 동의를 자문했다. 입법원은 2일후에(12월 29일) 입법위원회의 임기연장을 통과시켰다. 그후 둘째, 1952년 5월 2일과 1953년 4월 1일 입법원의 임기 상호용납관례에 따라 두차례 '총통'의 동의를 얻어 각각 임기를 1년 연장하였다.	참고표6 의 2부분
병	사법원 대법관회의는 입법원과 감찰원의 '합법성'을 제공한다.	첫째, 사법원 제1기 대법원은 1950년 1월 29일 '제31호 해석'을 만들어내어 '제2기 (입법.감찰)위원회도 법에 의해 선출, 모집할 수 dqt을 때에는 제1기 입법위원, 감찰위원이 계속해서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표6 의 3부분
정	입법원, 행정원, 그리고 총통은 국민대회의 '합법성'을 제공한다.	'합법성'의 자기만족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입법원은 1953년 9월 '제1차 국민대회대표 보충조례'를 통과시켰다. (2)행정원은 '헌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기 국민대회대표가 계속해서 차기 국민대회까지 직권을 행사하여 법에 의한 소집을 마치도록'비준하였다. (3)'총통'은 즉시 이 결의사항을 비준한다. (4)같은 해 12월 29일 입법원은 '국민대회조직법 제8조 조문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대회 개회인수를 대폭 낮춰 '1/2이상'에서 '1/3이상'으로 바꿨다.	

무	국민대회는 다 시 총통에게 되 돌아감으로써 '합법성체계'가 순환하게 된다.	첫째, '출결보충'을 얻은 국민대회는 가동되기 시작했다. 1954년 2월 19일 국민대회 개회는 호적이 임시주석을 담임하고 각종 방식으로 보충된 '국민대회위원'과 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온 1,200여 명의 국민대회위원을 더하여 마침내 1578명의 '국민대회위원'이 출석하여 이미 과반수를 개회할 수 있었다.
기	국민대회는 첫 번째 '임시조항' 을 수정하고 통 치권을 확장했 다.	둘째, 국민대회는 '합법성'을 둘려주기 시작했다. 이번 회기 중 3월 10일 국민대회 투표에서 총통대리 이종인의 탁핵안을 표결하여 1403명의 동의로 패твер시켰다.
경	국민대회는 다 시 '임시조항'을 수정하고 동원 반란평정체제를 팽창시켰다.	셋째, 합법성의 '순환'은 국민대회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번 회기 중 3월 20일에서 23일까지 두차례의 투표를 통해 장개석은 1507표를 얻어 제2대 총통으로 임명되고 모든 행정권의 법적인 근거를 대표하였다.

할 수 있으며 연인할 수도 있다.

(5) ‘무’, ‘기’, ‘경’에 관련하여: 국민당의 ‘당국’체제는 (1)국민대회가 형식적인 민의를 얻었으며 (2)총통의 권력은 군관체제의 거대세력 양자를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합법적인 환경을 통치하는 ‘자종체계’가 되었다.

우리는 냉전대치하의 대만에 대해 반성한다. 당시 국민당 정권은 정부를 바꾸어 '합법성'을 지닌 자중체제를 이루었으며, 실제로 '자유주의 입헌'이란 일개항에 대하여 정변을 진행하는 중대한 공정이 되었다. 특히 '자유주의입헌'이 강조한 권력의 '분립과 견제'의 원칙은 필경은 왜곡되어 '상호보호하되 견제하지않는' 작용을 하였으며, '당국'의 권력은 '나누되 분립하지 않는다'는 교묘한 조작을 하였다.(참고 <<부록 표6: 국민당이 정부를 바꾸어 '합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체제로 되었다>>) 사실상 자유주의하의 '법률형식주의'는 일찍이 국민당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끊임없이 '법률로 통치한다'는 한마디를 강조해온 바이다.

부록 표6; 국민당이 정부를 바꾸어 '합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체계로 되었다.

2. 정부를 학벌성의 자기증명체계로 바꾸다; '상호엄호하고 견제하지 않는' 권력분립

상술한 합법적으로 자기만족적으로 합리화한 말에 의하면, 마침내 제1차 국민대회가 허구적인 합법적 원천의 제공자가 되었으며, 그후 3차에 걸쳐 '동원반란평정시기의 임시규정'을 수정보완하였고, 나아가 원래있던 '당국'제도를 형성하고, 장개석 개인 통치를 주도하는 '동원에 반란진압을 더한다'는 시헌정을 다시 한 번 강화하였다. 이 헌정의 구조는 이미 내부환경의 '가지증명 기능'을 구비하였으나, 한 측면으로는 대만법제 회복상태의 실질적이 자기증명이 '합법성'에 모순되는 성격을 나타내었다. 한 측면으로는 정권이 존속할 수 있게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정당성이 부족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정권이 존속할 수 있게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제공한 셈이다. 그 검증은 다음과 같다.

- (1) '갑'에 관련하여: 입법원이 '전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결의하는 합법성이 없다.
- (2) '을'에 관련하여: 입법원위원이 감히 행정권에 결탁하여 연임을 한다.
- (3) '병'에 관련하여: 사법원 대법관회의는 헌정수호를 방기한다.
- (4) '정'에 관련하여: 입법원, 행정원, 총통 3자는 '제헌기관' 또한 대신하여, 국민대회를 차례로 보충

번호	비판	'합법성'의 자기증명	설명
1	(1)<<부록 표5>>의 갑에 대하여	입법원이 '전례에 따라 처리'하여 의결하는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입법원의 이항에 대한 결의는 오히려 '위헌'결의이다. 총통계열은 국민대회가 선거로 뽑았으며, 장개석총통의 후계는 입법원이 '의결'하고 '전례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원은 무슨 권리가 있어 장씨로 하여금 합법적인 총통의 신분이 되게 의결하였는가?
2	(2)<<부록 표5>>의 을에 대하여	입법원위원회가 감히 행정권과 협력하여 연임하다.	<p>전술한 '위헌'인 합법성을 따르는 환경은 '악성환경'으로 나타났다. 1966년 3월 19일 국민대회는 '동원반란평정시기의 임시규정'을 수차례 수정하였다.</p> <p>(1) 총통에게 동원반란진압기구를 설치하는 권한과 대정방침에 관련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통이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증설하였다.</p> <p>(2) 총통이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및 인사기구 조정을 허가했다.</p> <p>(3) 정부 또한 방책을 늘리고 중앙민의 대표를 보충해야 한다. 이 '자족체계'의 통치합리성은 '만년국회'의 허구적인 구조를 구성했다.</p>
3	(3)<<부록 5>>의 병에 대하여	사법원 대법관 회의는 헌정 수호를 방지한다	대법관회의는 결국 '위헌'해석을 냈다. 적정인원이 17인인 대법관회의는 겨우 9명만이 재직중(그중 7인은 위헌으로 '전례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 총통이 추천한 사람이다)인 위원회가 선출되어 회의를 집행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는 해석을 하는가? 이 위헌적인 월권해석에 근거하여, 제1기 입법위, 감찰위원회는 1948년부터 1993년 1월 31일까지 그 직권을 행사했다.
4	(4)<<부록 5>>의 정에 대하여	입법원, 행정원, 총통 3자는 '제헌기관' 역시 대신하여, 국민대회를 보궐할 수 있고 연임할 수도 있다.	<p>(1) 입법원은 불필요하게 '제헌기관'의 지위를 가지고서 경은 국민대회의 두차례 법개정에서 개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대회 인원을 증가시켜서 국민대회의 결원을 차례로 보충하며, 또한 국민대회가 '합법적인' 개회를 할 수 있도록 국민대회 개회 출석 인원수를 감소시킨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장총통을 선출했으나 만약 헌법의 규정에 의지하였다면, 입법원이 어찌 이같은 국민대회의 '보궐'을 행하는 보충조례를 제정하는 권력이 있겠는가?</p> <p>(2) 마찬가지로 행정원 역시 '위헌결의'를 하였다. 행정원이 무슨 권한으로 '제1차 국민대회가 차기 국민대회가 법률에 의거하여 개회하는 날까지 직권을 행사할 것을 비준'하는 의결을 하였는가? 심지어 총통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의결을 비준하는가? 이 불법적인 비준에 근거하여, 제1차 국민대회는 '만년국민대회'가 되었으며, 1948년에 상임하여 계속 연임하다가 1991년 12월 31일에서야 퇴임하였다.</p> <p>(3) 이에 국민당 '당국'의 오권현법체계는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원이 모두 총통이 만들어낸 법통의 '구조 공범'으로 연기하였다. 전술한 입법원의 개헌, 행정원의 의결, 사법원의 해석, 감찰원의 대통령 탄핵, '총통'의 비준은 결국에는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대회로 하여금 제2차에서 제7차에 걸쳐 장총통을 선출하게 하였다.</p>

더욱 심한 것은, 행정권의 통치위기에 대해 비록 입법권의 수호가 있지만 사법권의 막대한 힘이 서로 돋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헌정은 근대 자유주의입헌의 일항의 선명한 '반대교재'이다! 1953년 9월 입법원은 '제1기 국민대회대표 출결 보충조례'를 위헌제정하고 '변화될 종신제'를 거쳐, 중앙민의 대표를 모두 '종신대표'로 만들고, 1954년 3월에 거행된 '제1기 국민대회 제2차회의'에서는 순서상, 외관상 '법통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냉전시기의 '법률개정수술'은 상술한 지방과 중앙의 선거를 통해 50년대와 60년대에 국민당 대를출신인사가 중앙의 영도권을 장악하였고, 대만출신 인사는 시, 현급 이하 기관의 권리를 가질 뿐으로 중앙과 지방의 분리가 나타난다. 이후 대만정치 파벌의 발전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기 대법관회의의 ‘법률편의 행사’는 대만법을 발전시킬 많은 의식형태와 문화상의 ‘법률도구론’의 독소를 조성하였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이익교환은 최소한 ‘광복 대륙 설계 연구 위원회’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를 던어두는데 쓰였다. 1993년에 이르러 국민당은 대법관회의 ‘석자 제292호 해석’에 수긍하지 않고 입법원을 통해 위헌인 ‘국민대회대표 공적에 보답하는 것과 그 비용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1993년 7월 18일). 더욱 심한 것은 1994년의 제3차 개헌 때, 자기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해 헌법조문을 수정하는 조문을 특별히 제출했다(개정조문 제7조).

3. 합법성의 자족체계와 자증체계의 의문에 대한 해소: 정권의 공고화에 대한 백색테러

실질적인 합법성을 갖추지 않은 국민당 당국은 그 계속된 정권 내부의 통치 때문에 여전히 이 항의 요소를 따른다. (1) '미군협방' 대만을 단절시키고, '당국'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회를 통괄해서 지배토록 한다. (2) 대만을 원래 고립도서에 속하므로 대외정보경로가 폐쇄되어 있다. (3) 내부는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백색테러가 이식되었다.

이 백색테러의 작용은 '감염적인 것'과 '연쇄적인 것'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감염적 측면은 '반고정서 고무'에 표현되어 있고, 연쇄적인 측면은 '실행에 대한 특수 통제'이다. 예를 들어 잡다한 '7대 특수공작 계통증'에 단지 경찰만을 말하면 그 규모나 권한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에 이른다' 소위 백색테러의 연쇄성은 '국민당은 그 통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자발적으로 '강첩방지활동'을 개시하였고, 많은 '공비간첩법안', '반란법안' 등을 만들어 냈다. 신문상에 수시로 개제되는 '공비, 간첩 법안'의 소식은 전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백색테러하의 사회 지식인 당파분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르다.

(1)감금 또는 총살: 예를 들어 1993년에 발생한 대북의 '六張犁公墓 부근의 백색테러 200(별칭 163) 무덤안의 문서' 또 예로 이오 전 정부의 자료인 29407건의 혐의범자

(2)숙청: 예를 들어 조작된 1953-54년의 '吳國楨사건', 1955년의 '子小立人사건'과 1960년 '雷震사건' ('자유중국'사건 역시 '대만 지역 조직 반대당의 첫 범제의 횡책'으로 지정되었다)

(3) 뮤비 쿠

(4) 기만, 사기

역사가 실제로 증명하듯이 백색테러는 국민당 정권의 공고화에 대하여 바로 '합법적'인 자족체제와 자증체계에 대한 의문을 소멸시켰다. 그중에 예를 들 가치가 있는 것은 1957년의 '5.24사건' 이것은 대만인들이 자발적으로 반미운동을 한 것이다. '劉自然사건'이라고도 칭한다. '대북-워싱턴'간의 냉전연합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대만장국이 미군에게 '치외법권'을 주었고, 미국이 대만에 원조하는 인원(임시 파병 인원도 포함), 개개인이 외교관 대우를 누렸다. 유자연이 살해당한 이후에도 대만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을 파견해 민중을 진압하였다. 또 당파분자의 '묵비권'과 기만에 관해 보면, 앞에서 말한 각급 인민대표 이외도 입법원의 위원들이 예가 된다. '기만'의 과정은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튼튼한 효과를 갖게 한다. 입법원은 국가 최고의 입법기관이다(헌법 제62조). 그러나 45년에 달하는 제1기 입법위원회 시대 오히려 입법원은 피통치자를 기만하였고, 더욱이 점차 노령화하고, 마침내는 총통부 혹은 행정원의 '입법국'으로 몰락하였고,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시로 인민의 이익과 충돌하였다. 법을 제정하는데 태만한 것을 제외하고, 다수의 입법위원 역시 계엄시기 전시 비상시기 또는 사태 등위체언하는 후

란시기의 '특별법전'을 입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냉전시기를 탓으로 하는 대만의 법제는 비상사태의 법률규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냉전시기의 구조와 매우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다.

제 5'절 맷음말

냉전시대의 백색테러의 영향에 관하여 보면, 역사는 너무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 단지 본문을 예로 들어 가르키면, '말로는 계엄을 해제하나 실제로는 계엄을 실시하는' 현재의 가상아래서 국가 및 그 통치집단은 역사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첫째로 사회, 문화, 심리 측면에서 말하면, 일반적인 평론은 백색테러의 후유증은 매우 깊다고 한다.

'인간성은 왜곡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인간 관계와 面從復背하는 사회풍기가 매우 빨리 대만 전체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뜻을 얻는데 아첨하고 추종하는 집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기풍속에서, 백색테러의 파괴력은 실제로 육체에서부터 영혼까지 파괴하는데 이르렀다. 소련의 대문호 L.N.Tolstoy의 말을 예로 들면

'국가가 한 최대의 악행은 사람의 생활을 파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소멸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대만사회의 '개인화'현상, 국가의 악은 이미 역사의 심오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법률 배후의 의식형태 및 사회가 법률에 대한 대우에 관해 보면 대만사회는 국가의 백색테러 공포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지극히 명확히 드러난다. 러시아의 짜아르 통치 시기의 백색테러의 예를 비추어 보면 톨스토이는 아래와 같이 평론하였다.

'누구나 다 안다. 법률에는 사욕과 기만이 가득차 있고, 각개 당파 투쟁의 산물이 들어 있다. 법률중에는 진정한 평등이 없고 진정한 평등이 있을 수도 없다. 현대의 사람들이 국법과 민법의 준수, 인류이성의 요구에 진실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이 알고 있었다. 진실성을 준수하는지 의심할 만한 법률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이러한 불합리,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는 법률을 준수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대단히 괴롭다.'

여전히 이렇게 본문의 주제인 냉전하에서의 법제를 분석하면 그 잔혹은 독소는 어느 한도까지는 여전히 대만에서 가시지 않은 악몽이 될 것이며 노신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장현충이 사람의 껌질을 벗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역적' 경청의 껌질은 영락제 앞에서 벗겨져 있다. 노예들로 '잔혹한 천벌'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잔혹한 형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남공북조집, 우성)

대만이 당면한 법제는 여전히 잔인한 형벌의 문화로 가득차 있고 인민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까다롭게 각인되어 있다. 백색테러하에서의 선혈이 낭자한 역사는 끝을 다할 것인가. 인민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아니면 여전히 멀리있는 것인가?